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 1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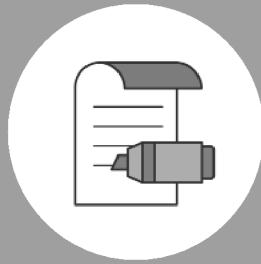
“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바로 성실납세 입니다.”

목차

CONTENTS



I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5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5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40
II	전자신고·납부 요령	69
	1. 전자신고 요령	70
	■ 홈택스(PC) / 70 ■ 모바일 홈택스 / 108 ■ 보이는 ARS / 117	
	2. 전자납부 요령	120
	■ 홈택스(PC) / 120 ■ 카드로택스 / 124 ■ 모바일 홈택스 / 127	
	■ 수동납부서 / 128	
III	자주 찾는 문답사례	133
	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	134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50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55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69
	5. 간이과세제도 개편 관련 문의	17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I.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8.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2*. 7. 1.~ 202*. 8. 13.

* (신고·납부기한) 202*. 9.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1)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 (11)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11)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아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자
가산세액	차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2)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매입액(공급대가) × 0.5%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배제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예정고지(신고) 세액	라
가산세액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마.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유형별 제출 서류>

사업자구분	제출대상 서류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12. 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 관리업) 13.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14. 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15.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16. 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17.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8.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9.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2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2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23.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현금매출명세서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건물관리명세서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첨부 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류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전자 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 확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 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외화입금증명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확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확득명세서에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서류(B/L)]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 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은 외화입금 증명서에 갈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확득명세서에 외화확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전자 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선(기)착원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탑승) 신고수리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영세용적용대상	첨부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상시 주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원료증명서 또는 법24① 1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관광알선용역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영세용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발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정예인용 보장구 및 경보통신 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총양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 환급	환급신청서, 농·어업인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 신청명세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 증명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신고/납부→세금 신고→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¹⁾ 보이는ARS(☎1544-9944)²⁾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1)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
- 2) ☎1544-9944로 전화→보이는ARS 선택→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입력→신고서 작성→신고서 제출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22. 1. 1.부터 1. 9.까지 ⇒ 06:00 ~ 24:00
- 2022. 1. 10.부터 1. 24.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 2022. 1. 25.(신고마감일) ⇒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가가치세 납부 (구체적인 납부요령은 120쪽 참조)

1)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 ~ 23:30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기에서는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CD/ATM기 이용가능시간 (연중무휴)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3)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 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 ~ 23:30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banking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banking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탭’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속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⑦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자. 부가가치세의 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밖의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차. 기한 후 신고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

1)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1)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납세자용>

□ (경로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신고서 작성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예정고지세액조회 신고도움서비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예정/예정)	정기신고 (제업확정)	월별 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영세율)	월별 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대리납부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경신고 (회계프로그램)
카드사 대리납부 >				

□ (경로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Home 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세보

조회/발급

조회/발급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계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본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 내용으로 은행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확인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 주택 등 기공시가 조회
- 현저점수청구조회
- 융융차 기액조회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 세금포인트 해택
- 세금포인트 할인소필용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

- 발급
- 목록조회
- 할계표 및 통계조회
- 사용자유형별 조회제한 관리
- 주민번호수취본전환및조회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 거래처 및 목록관리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 수신전용메일 신청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결영서식사업자파일제출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사(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달에 종료된 경우 다음달로 연장합니다.)

발급 및 전송기한 안내보기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용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 매입회단
- 기부금신청서 조회

세금 신고 납부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조회
- 납부내역 조회
-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 주택세금100원100담 [2]
- 양도소득세 증합안내
- 줄여세할증내역
- 상속세 할증대상 사건중개자 신고경정보 조회
- 부가가치세 매입지남부론리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 조회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업종코드별 부가세 조회
- 내국선출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목록 조회
-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조회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일동의
- 나의신고대리수일동의
- 나의세무대리인 조회
- 발급된 증명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해택
- 세금포인트 필요소필용 안내
- 과세유형전관
- 사업용계좌잔고현황
- 주유면허상태
- 기준(단순)경비율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 불복청구진행상황
- 불복청구신청일지문
- 위월회회외자료
- 과세자료조회
- 지급보증 정성기여 조회
- 납세관리인 위임자 조회
- 전동시장 정보 조회
- 반출된 우편고지서 내역

<세무대리인용>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기정대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변경 조회

-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 고지내역 조회 >
- 채납내역 조회 >
- 환금금 조회 >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

세무대리인 공통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경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총액 조회 >
- 사업용신용카드누계조회 >

신고대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리 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조회

- 증여세결정내역 >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연금건강고용신재보험료조회 >

납세관리

납세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관리

<내부직원용>

□ 대내포털 → 신고/결의 →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CA30]부가가치세 - X

회원개신의견
인출
☆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유관업무이동

회원Clear

*과세기간(년/기) 년 선택 기 *신고구분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조회(F2)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개별분석 자료

안내사항	안내내용
------	------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	------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예시) >

○ 개별분석자료 TAP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도와 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2기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안내사항	안내내용		
그 밖의 공제해당금액 규모	그 밖의 공제해당금액 (%)	해당금액 합계(%)	그 밖의 공제해당금액/ 해당금액(%)
13,940	47.295	29%	

○ 사업과 관계없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해당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시 명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신고 누락 ○ 소수분복 성공보수, 신고대별 수수료, 겸임비 등 소액 수수료, 설계·디자인 보수 ○ 실제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고 누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후 신고 누락 ○ 임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기 매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우회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가사를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 직전기 개인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

(단위: 천원, %)

구분	매 출					매 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정규 증빙 외)	영세품	합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의제매입	재활용폐자원	합계
신고내역	14,000	4,000	6,000	8,000	32,000	10,000	12,000	14,000	16,000	52,000
구성비율	43.8	12.5	18.7	25.0	100	19.4	23.0	26.9	30.7	100

세금계산서, 43.8
기타(정규증빙외), 18.7
영세품, 25
신용카드 등, 12.5

신용카드 등, 23
의제매입, 26.9
재활용폐자원, 30.7
세금계산서, 19.4

● 직전기 업종권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업종기준)

(단위: %)

구분	매 출					매 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정규 증빙 외)	영세품	합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의제매입	재활용폐자원	합계
구성비율	34.4	13.1	23.6	28.9	100	34.3	39	9.7	17.0	100

세금계산서, 34.4
기타(정규증빙외), 23.6
영세품, 28.9
신용카드 등, 13.1

신용카드 등, 39
의제매입, 9.7
재활용폐자원, 17
세금계산서, 34.3

※ 상기 매출 및 매입 구성비율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본사항 TAP

과세기간(년/기) 2021 년 2기 신고구분 예정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기본사항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	종로 세무서 소득세과 유폴합 조사관 (☎ 0000-0000-0000)		
상호(법인명)	테스트(주식회사)	성명(대표자)	<테스트개인3>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부가가치세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편입금 결제 등으로 받은 영수증 확인
	<영세종류> 수출관련내역·내국산증명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매입	<원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결합> 과·면세 결합사업자 과세매출 지정 확인
	<세금계산서> 문제·간이·과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질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기타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응금액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결합> 과·면세 결합사업자 중복매입세액 안분 지정 확인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기타	<매입채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자용용·과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달(1%), 지연전달(0.9%)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안 및 적용연도 공금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세법개정내용 TAP

과세기간(년/기) 2021 년 2기 신고구분 예정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6,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중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남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평균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평균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간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 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면세농수산물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선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중금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매정무과기간 남부세액 신고시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정후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환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유통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유통의 경우 유통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주지
부가가치세 영세종류 대상 추가	한국형도공서에게 적용 공급하는 도시합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평균 추징시유 보완	과회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환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평균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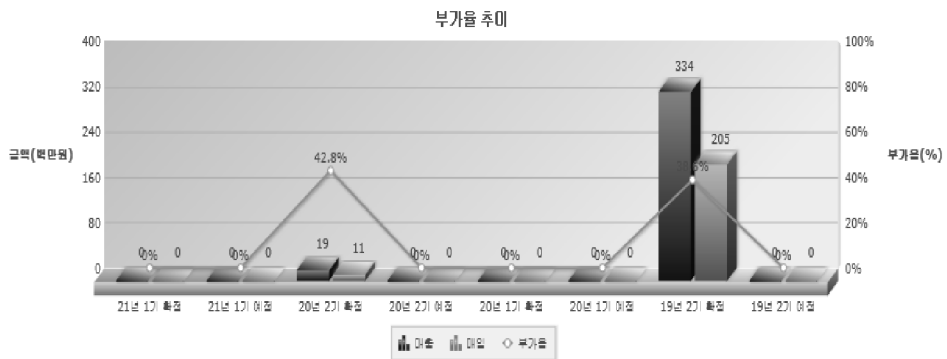
• 과세기간(년/기) 2021년 2기 |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

-

① 과거 신고내역 분석

②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



③ 면세매출 신고 비중

(단위: 백만원, %)



*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면세 수입금액 : 신고서 상 면세사업수입금액
 면세 수입금액 = 과세매출금액 + 면세 수입금액
 면세매출비율 : 면세 수입금액 ÷ 전체 매출금액

④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고서 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과세 매출금액

2) 안내항목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1	매입	공통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2	매입	공통	사실과 다른 매입거래에 대한 불공제 내역	과세인프라
3	매입	공통	신종 업종(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블로그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	매출	공통	영세율 매출 사업자의 수출통관자료 대사 자료	과세인프라
5	기타	공통	월조기 환급신고분 확정신고 반영 배제 안내	과세인프라
6	매출	공통	위장가맹점 명의로 부당 발급한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7	매출	공통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	매출	공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9	매출	공통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10	매입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과세인프라
11	매입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임차 내역	과세인프라
12	매입	공통	개인적 사용혐의가 있는 신용카드 수취 내역 안내	과세인프라
13	매입	공통	그 밖의 신용카드 과다 매입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과세인프라
14	매입	공통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과세인프라
15	매입	공통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16	매입	공통	사업용 신용카드 미사용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17	기타	공통	연속 3개 과세기간 일반환급 신고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18	매입	공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제외 안내	과세인프라
19	매입	공통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20	매출	공통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안내	과세인프라
21	매출 매입	공통	과·면세겸업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22	매출	공통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현금수입업종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23	기타	공통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 사업자 안내	과세인프라
24	매출	공통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명의이전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25	매출	공통	간이과세자 재고납부세액 계산 안내	과세인프라
26	매출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유류매입액 안내	과세인프라
27	매입	공통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내문	과세인프라
28	매출	공통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	외부수집자료
29	매출	공통	국가기관 등과 거래분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30	매입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항목(외제차)	과세인프라
31	매입	공통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32	매출	공통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안내	과세인프라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33	매입	공통	사업용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34	매출	건설	(근로복지공단 수집)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	외부수집자료
35	매출	건설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 과세매출 신고 안내	빅데이터
36	매출	건설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7	매출	건설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8	매출	건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9	매출	건설	건설업(토공사)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0	매출	건설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외부수집자료
41	매출	도소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집)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	외부수집자료
42	매출	도소매	(이동통신사 수집)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 자료	외부수집자료
43	매출	도소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분석 자료	외부수집자료
44	매출	도소매	퍼스널 모빌리티용품 온라인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5	매입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46	매출	도소매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47	매입	도소매	자동차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수집안내	외부수집자료
48	매출	도소매	핀테크 결제내역 등 오픈마켓 실판매자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49	매출	도소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0	매입	도소매	동일인으로부터 다수의 중고자동차 구입한 내역	과세인프라
51	매출	도소매	약국 사업자 마스크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2	매출	도소매	자동차매매상사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과소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3	매입	도소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과세인프라
54	매출	도소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과세인프라
55	매출	도소매	편의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6	매출	도소매	골프용품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7	매출	부동산	부동산임대업자 부당환급 및 매출누락 혐의자료	빅데이터
58	매출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자 판매 실적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59	매출	부동산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과소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0	매출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사업자 현금지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1	매입	부동산	오피스텔 시설투자 조기환급 후 무실적, 무신고 사업자 안내	과세인프라
62	매출	부동산	건물 분양계약 해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3	매입	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4	매출	서비스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65	매출	서비스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66	매출	서비스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67	매입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외 부수비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외 안내	과세인프라
68	매출	서비스	배달업 매출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9	매출	서비스	스크린골프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0	매출	서비스	플랫폼운영사업자 통한 매출거래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1	매출	서비스	프리랜서 플랫폼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2	매출	서비스	운수사업자 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 과다자료	과세인프라
73	매출	서비스	골프부킹업을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과세인프라
74	매출	음식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75	매출	음식	과·면세 검업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안내	과세인프라
76	매입	전문직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77	매입	전문직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과세인프라
78	매입	전문직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9	매입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입료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0	매출	전문직	피부·성형외과 보톡스(필러)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1	매출	제조	제조업 신용카드발행세액 부당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82	매출	제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한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83	매출	제조	도소매 검업 제조업체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과세인프라
84	매출	제조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5	매출	기타	간이과세 유형전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과세인프라
86	매출	기타	아파트 입주민에게 제공한 용역 기타매출 신고안내	과세인프라
87	매출	기타	차명계좌신고 과다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8	매출	제조업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9	매출	제조업	제조업 중 부산물발생업종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90	매입	공통	온나라상품권 환전내역 안내	외부수집자료
91	매출	도소매	홈퍼니싱 사업자 박람회 수입금액 안내	과세인프라
92	매입	도소매	고가오토바이 매입 부당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93	매출	서비스	바다낚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94	매출	건설업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95	매출	도소매	요소수 판매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96	매출	서비스업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97	매출	도소매	영세율로 발행한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계내역 안내	과세인프라
98	매출	서비스	캠핑장 예약업을 통한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과세인프라

나.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29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과세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공통	과세대상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496, 2021.06.03.)
공통	과세대상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2021.11.25.)
공통	과세대상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2021.08.12.)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상품 중개	과세대상	<p>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 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2021.11.22.)</p>
부동산 매매업	사업양도	<p>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76, 2021.06.10)</p>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p>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登記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2020.11.04.)</p>
상품 중개	영세율	<p>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p>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영세율	<p>「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05.27.)</p>
공통	면세	<p>「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 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2021.09.08)</p>
공통	면세	<p>「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08.24.)</p>
의료업	면세	<p>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2021.11.11)</p>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공통	매입세액공제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공통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2021.11.22)
공통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 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08.12.)
공통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2020. 12.31.)
공통	대리납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 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366, 2021.08.13.)
공통	공급가액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2021.06.24)
공통	공급가액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부동산매매업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공급시기	<p>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 소비자가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일시불로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p> <p>(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2021.08.31)</p>
공통	에너지	<p>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질보상 및 배송 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p> <p>(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2021.10.13)</p>
공통	에너지	<p>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 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위 질의의 경우 종업원할인이 거래 조건에 따른 매출에너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p> <p>(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2021.09.09)</p>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세금계산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2021.01.22.)
여행업	세금계산서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2021.09.14.)
공통	가산세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2020.11.20.)
공통	가산세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2021.06.22.)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2①)
-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⑩)
-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 1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연 1.8%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연 1.8% → 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 개정취지

-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p> <p>*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p> <p>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p>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법 처벌 사실이 없을 것</p> <p>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p>□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p> <p>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p>(좌 동)</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3억원 → 2억원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 개정취지

-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대상</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p> <p>- 국민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p> <p>*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p>	<p><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p> <p>○ (좌 동)</p> <p>-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p> <p>*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p>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 개정취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적용 범위</p> <p>○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상향</p> <p>○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p> <p>-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p> <p>-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input type="checkbox"/>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 개정취지

-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배제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도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전문자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p> <p style="font-size: 2em;">}</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font-size: 2em;">}</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좌 등)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 개정취지

-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 가치 율	구 분	부가 가치 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원칙) 영수증 발급 ○ (예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 개정취지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교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2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input type="checkbox"/>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영 §73③,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input type="checkbox"/> 발행 요건 변경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¹⁰)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p> <p>*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p> <p>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p> <p>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p> <p>○ 일반과세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포함</p> <p>○ (좌 동)</p> <p>○ 간이과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 개정취지

-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한도)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말까지 1,000만원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1.12.31.까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사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r> </tbody> </table> 		공제율	20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p><input type="checkbox"/>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단일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1.12..31.까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r> </tbody> </table> 	공제율	2021.12..31.까지	1.0%	1.3%
	공제율	20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2021.12..31.까지													
1.0%	1.3%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p> <p>○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p> <p>○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p>○ (좌 동)</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p> <p>○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30%)</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p> <p>○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업종 부가 가치 율</td> </tr> </table>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해당 업종 부가 가치 율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p> <p>○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p> <p>○ (좌 동)</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 0.5%</td> </tr> </table>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0.5%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해당 업종 부가 가치 율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0.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 공급대가 × 0.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p> <p>○ 재고매입세액(공제)</p> <p>-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p>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0} \right)$ <p>○ 재고납부세액(가산)</p> <p>-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p>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0} \right)$	<p><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 변경</p> <p>○ (좌 등)</p>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0} \right)$ <p>○ (좌 등)</p>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0} \right)$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 개정취지

-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p> <p>*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 (공제율)로 의제 공제</p> <p>○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p> <p>○ (공제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업 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음식점 (개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 4억원 이하 과세표준 4억원 초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음식점(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9/109 (‘21년 말까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8/10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유희장소,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6/10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자점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6/10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인,중소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10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유희장소,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2/102</td> </tr> </tbody> </table>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 과세표준 4억원 초과	음식점(법인)	9/109 (‘21년 말까지)	제조업	8/108	과세유희장소, 기타	6/106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희장소, 기타	2/102	<p>□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p> <p>○ (적용대상) 일반과세자</p> <p>*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p> <p>-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p>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 과세표준 4억원 초과																
음식점(법인)	9/109 (‘21년 말까지)																
제조업	8/108																
과세유희장소, 기타	6/106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희장소, 기타	2/102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input type="checkbox"/>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신고시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신고사유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의무 <input type="checkbox"/> 신고시 제출 서류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항목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p> <p>○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p> <p style="margin-left: 20px;">①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p> <p style="margin-left: 20px;">②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p>	<p><input type="checkbox"/>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p> <p>○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③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것</p> <p>○ (좌 동)</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가> <추 가>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60②,③1·3·5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60⑥)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input type="checkbox"/>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0.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 개정취지

-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요건)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과·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 3/103 - 중고차 : 10/110 ○ (적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 2021.12.31. - 중고차 : 20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margin-left: 20px;">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 : 2022.12.31. </div>

○ 적용시기

- (적용요건 정비) 20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 §106②)

○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2020.12.31. 	<p>□ 적용기한 2년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2022.12.31.</p>

□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2.12.31.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개정취지

- 육아비용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2.12.31.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①)

○ 개정취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input type="radio"/>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input type="radio"/>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022.12.31.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3①)

○ 개정취지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input type="radio"/>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input type="radi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022.12.31.



전자신고·납부 요령

1.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PC)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보이는 ARS 신고 방법

2.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PC)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카드로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1 전자신고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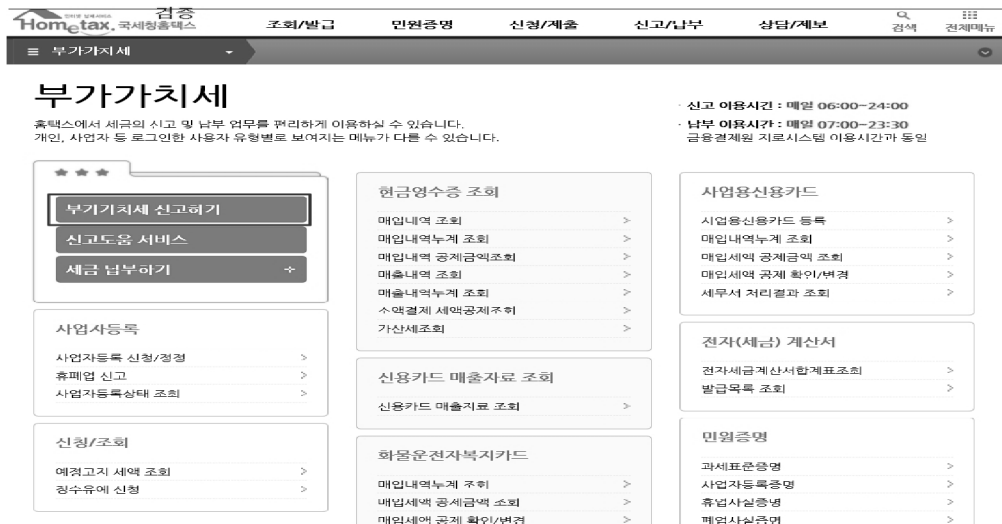
가. 홈택스(PC)

1) 접근 경로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 ‘부가가치세를 클릭 ⇒ 부가가치세 전용화면 ⇒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자료, 신고 참고 사항 등을 조회



-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



<참고1>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담 시 해결이 어려우면 국세 상담센터(☎126-1-3)로 전화하도록 안내
- (관련 자료)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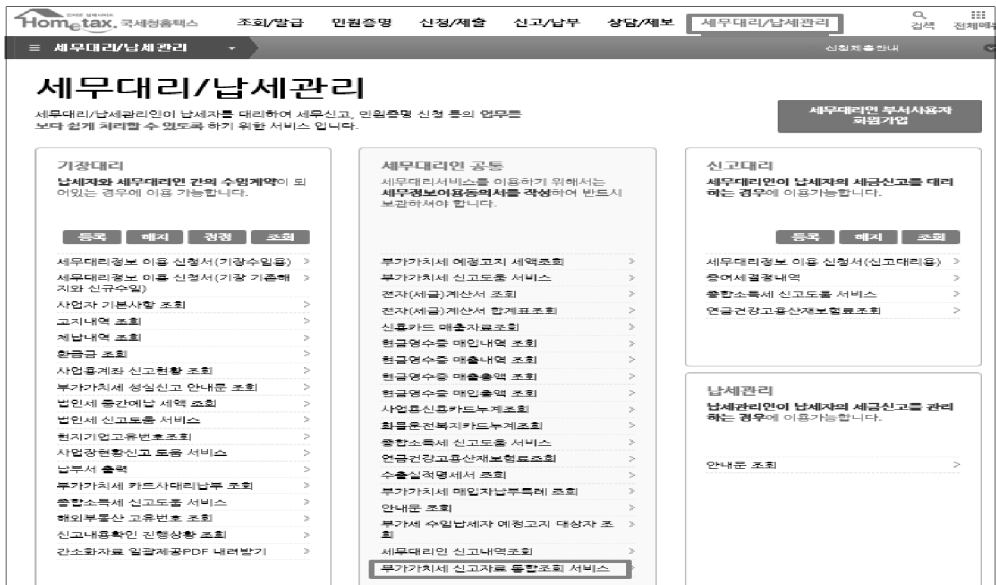


<참고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22.1월부터)

○ (납세자 접근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 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 부가세 확정(예정)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일괄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자료를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확정(예정) 조회
- 개인 일반 사업자 : 확정(8개월) 조회 • 개인 간이 사업자 : 확정(1년) 조회
- 제공시기
 - 전자(세금) 합계표 매출매입 : 종속마감(영업일기준 매월 11일) 이후 직전분기 자료 제공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 분기 시작일의 15일경 부터 직전분기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분기 시작일(1일) 직전분기 자료 제공
- 참고사항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판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업체 통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은 공제대상 항목에 대한 금액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파세기간(년/기) 년 ▼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기본사항	신고유형	일반	주업종코드	809009
	법인예정고지대상	N	간이부가율	
	관할서	복대전세무서	상호	테스트성명
	파세기간	20210701~20211231		

매출항목		공금가액(원)	세액(원)	매입항목		공금가액(원)	세액(원)
		전자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input type="text" value="0"/>		전자계산서	<input type="text" value="0"/>			
신용카드 (부가세포함)	<input type="text" value="0"/>		사업용신용카드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현금영수증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현금영수증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항목		금액(원)	부속서류 제출대상	구분	제출대상여부
		예정고지세액 (일반)		<input type="text" value="0"/>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일반)	<input type="text" value="0"/>		부동산임대공금가액 명세	N	
예정부파세액 (간이)	<input type="text" value="0"/>				
예정신고세액 (간이)	<input type="text" value="0"/>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2)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조회됨
- 단일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자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구분	2021 년 27기	<input type="radio"/> 예정 <input checked="" type="radio"/> 확정
신고대상기간	2021-07-01	~ 2021-12-30
사업자등록번호	101 - - -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자		

● 사업자세부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선택-	전자우편주소	@ - 직접입력
우편번호		주소검색 ※ 주소 정정 필요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업종코드		종목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히 신고 종료
-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선택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영역번호/내역 101-01-20434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일반과세자 신고내역

03. 신고서제출

● 입력서식 선택

입력할 서식을 선택 하신 후, 신고서 제출까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 주입종류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 "일괄-공제내역(가산세/예정고지(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화면하단의 선택사항을 체크하셔야 신고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감감 - 공제세액	기타제출서류(양서증 제외)	기타제출서류(양서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집계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동행건로통역 매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매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집계표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input type="checkbox"/> 건물관리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수출실적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건물 등 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연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내국인출장 경비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전자화폐결제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도신고서	<input type="checkbox"/> 경제울 정부서류 제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현금매출 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판매관급금 등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처별 계산서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선박에 의한 운송운역 공급가액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매출분	<input type="checkbox"/> 농산축산물유통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 계산서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누락분	<input type="checkbox"/>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출역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세표준공제	<input type="checkbox"/> 과실종폐지침 및 종고 자중지 폐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재화운역 공급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면세수입금액	<input type="checkbox"/> 과세사업관련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통품판매, 외국관 관세판매 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매출세액 변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화획득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판매발지출할 매입세액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유통발 판매액 집계표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누락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즉시현금 통용 판매 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제매입세액		<input type="checkbox"/> 일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판매발지출할 매입세액 (대손처분 받은 세액)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증감 - 공제세액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스크린롤 폐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 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규모 저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서		

경감 - 공제세액	예정고지 - 예정신고 미납금세액
<input type="checkbox"/> 특수운송사업자경감세액	<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세액
<input type="checkbox"/> 현금경수용사업자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미납금세액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납부특별기납부세액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미전 **저장 후 다음이동**

바로그이

로그이후

자주찾는 메뉴

세금종류명 서비스

My홈택스

홈택스안내

검색

○ 신고서식을 선택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속서류를 작성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 가산세 입력화면은 '뒤쪽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① 신고내용<앞쪽>

-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신고내용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는 "신고서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신후 보셔야 작성된 첨부서류내용이 신고서반영되어 보여집니다.

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액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액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액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작성하기		0
합계 (9)	0		㉑	0

③ 과세표준명세 (단위: 원)

금액 0 **작성하기** ※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문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④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액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액계산서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작성하기		0
세액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액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3)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㉒	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㉑ - 매입세액 ㉒)

⑤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0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㉓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작성하기	㉔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⑥ 최종 납부(환급) 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21)			㉕	0
예정고지세액 (22)			㉖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도움말	㉗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도움말	㉘	0
신용카드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조회하기	㉙	0
가산세액계 (26)		뒤쪽으로	㉚	0
차기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 (27)				0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보여지고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보여줍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⑦ 국세환급금 계산신고(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원)

거래은행 -선택-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⑧ 면세사업 수입금액 (단위: 원)

금액 0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⑨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82)	0	작성하기
계산서 수취금액 (83)	0	작성하기

이전 **신고서 입력완료**

○ 신고내용(뒤쪽)에서는 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산세는 직접 입력

● 신고내용(뒤쪽)

-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신고내용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매출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38)	0	10 / 100	0
과세 기타 (34)	0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35)	0	0 / 100	
영세율 기타 (36)	0	0 / 100	
합계 (37)	0		0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매입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30)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0		0
합계 (40)	0		0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신용카드대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1)	0		0
신용카드대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42)	0		0
의제매입세액 (43)	0		0
재환율과지환율 매입세액 (44)	0		0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45)			0
제고매입세액 (46)			0
번제대손세액 (47)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0
합계 (49)	0		0

●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0)	0		0
공동매입세액 면제사업등분 (51)	0		0
대손차분받은 세액 (52)	0		0
합계 (53)	0		0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54)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0
특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6)			0
대리납부세액 공제 (57)			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0
기타 (59)			0
합계 (60)			0

● 가산세 명세 (단위:원) | **과세표준**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역조회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대동등등 (61)	0	1 / 100	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62)	0	1 / 100	0
<세금계산서> 지연수령 (63)	0	5 / 1,000	0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64)	0		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전송)서명전송 (65)>	0	5 / 1,000	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전송)미전송 (66)>	0	1 / 100	0
<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전송)발급명 (67)>	0	5 / 1,000	0
<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전송)지연발급 (68)>	0	5 / 1,000	0
<신고 불성실> 후신고<일반> (69)	0		0
<신고 불성실> 후신고<무담> (70)	0		0
<신고 불성실> 과소·소과과과신고<일반> (71)	0		0
<신고 불성실> 과소·소과과과신고<무담> (72)	0		0
납부 불성실 (73)	0		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0	5 / 1,000	0
연간매출명세서 미영입 (75)	0	1 / 100	0
무통산명세서 과세표준명세서 미영입 (76)	0	1 / 100	0
<매입자 납부드레> 거래개최 미시요 (77)	0		0
<매입자 납부드레> 거래개최 지연입금 (78)	0		0
합계 (79)	0		0

이전 신고서 입력화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단위: 원)

과세요준 및 매출세액		금액	세율	세액
항목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과세 매출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영세음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음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합계	(9)	0		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서, 반드시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음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음분		
소계			과세분		
			영세음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아래 세부명세 입력시 자동함계됨	
			영세음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직접 입력	
			영세음분		
소계			과세분		
			영세음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매출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과세분 영세음분 매출자발행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주류 비주류업종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주류

1 총0건(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전 입력완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작성하기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출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작성하기		0
합계 (9)	0		0	0

② 과세분 (단위: 원)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0	세액(10/100)	0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위: 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금액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③ 영세율분 (단위: 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0	세액(0/100)	
------------------	---	-----------	--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단위: 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대행(택시, 이니스시스, kcp 등)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면세매출분				
분사료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직불·기명식신용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기명식신용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	--------	------------	--------

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이전 입력완료

- 신고서 앞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하여도 작성 가능함

◉ 경감·공제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input type="text" value="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input type="text" value="0"/>
합계 (20)		@	<input type="text" value="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원

전자화과 매출금액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화과발행세서를 작성하면 공제금액에 자동 반영되며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원

공제세액 원

가공제세액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법인납세자 : 공제 불가
 2. 개인납세자 중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중 일반과세자 :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직전년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6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피모트 매출·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도움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대행(택시, 이니스스, kcp 등)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구분	신용·적립·기행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적립·기행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합계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과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당사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적립·기행식선불카드 발행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단위: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기타매출 작성하기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과세 배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대손세액 가감 (8)		작성하기	
합계 (9)	0		0

① 기타매출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업자 작성	작성하기	금액	0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함께 0 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② 과세분 (단위: 원)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123,445	세액(10/100)	12,344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순수 현금매출액을 작성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전자과매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위: 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금액	0
전자과매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③ 영세율분 (단위: 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0	세액(0/100)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임대사업자)

도움말

- 전산매체 제출용으로 생성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부동산소재지 주소검색	지번주소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도로명주소 <input style="width: 250px;" type="text"/>

● 임대수입금액 합계 (단위: 원)

구분	임대차 계약내용 보증금	임대차 계약내용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합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보증금 이자(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월 임대료(계)
합계					

●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직전기 신고 임차인 조회 작성 시 유의사항 갱신일 입력 도움말 총, 면적 입력요령

※ [임차인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전기 임대사황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조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성명(상호)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갱신일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	<small>※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small>			
입주일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	퇴거일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		

-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미입력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는 해당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 임차인이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 중 입주 또는 퇴거한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일자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자수정

동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층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호수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면적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	---	--	----	--	----	--

- 면적, 층 등 임대정보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물성실 입력 시 가산세 검토 대상)

- 면적 입력요령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공용면적 포함)

- 층 입력요령 : 임차인이 사용하는 모든 층 기재

※ **월별 조기환급신고가 있는 경우, 미정 또는 확정 신고서 보증금 이자는 직접 계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월임대료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임대수입금액	보증금이자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월임대료합계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 임대사업명세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 보증금이자 계산 공식 : 임대보증금 X 정기에금이자율(연1.2%) X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예시) 40,000,000원 X 정기에금이자율(연1.2%) X 181(1기 확정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365 = 238,027원

· 월임대료 : 부가가치세율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공급대가(1,100원) = 공급가액(1,000원) + 부가가치세(100원)

● 임대사업명세 단위 (면적:㎡, 금액:원)

	일련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상호(성명)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동	층	
<									>
1 총건(1/1)									

- 임차인 별 수입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을 정정하려면 삭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내용삭제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작성하기		0
합계 (9)	0	0	0

과세표준명세서 (단위: 원)

금액 작성하기 ※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명세서

- 업종별 과세표준명세서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업종코드	업태	종목	금액
701201 코드조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집포, 자기땅)	
코드조회			
코드조회			
코드조회			
701201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합계			0

※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추가 또는 변경 하십시오.
기타(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적매정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매입 작성 후 고정자산으로 분류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수출기판 수입 납부유예 (10-1)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매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0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매입 작성 후 분류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매세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나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서, 반도시 기관환급공문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⑥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⑦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영세 작성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매입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과세분 영세율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1 총 0건(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⑧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 계				

-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력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됨

● 매입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12)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0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위:원)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건축·구축물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세급신고 메인 화면에서 "부속서류제출하기"를 활용하십시오.

● 합계 (단위:원)

구분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이전 입력완료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역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제철용과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재고매입세액		0
변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0
합계	0	0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도움말

- 전산매제 제출용으로 생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화면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란에란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법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금가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세 제출 불필요)
- 미리보기는 500건만 제공됩니다.
- 정기신고분 재계출, 수정신고, 경쟁경구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미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정보

카드회원번호		※ +/- 없이 입력하십시오.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원
		세액
		원

※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	--------	-----------------	------	------	----

1 총0건(1/1)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 합계

(단위:원)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 위 합계 금액중 면세분매입금액, 면세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시기바랍니다.

(단위: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면세분 일반매입		
면세분 고정자산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일반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고정자산매입		

이전 입력완료

-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④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재환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재고매입세액		0
번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0
합계	0	0

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도움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 매입가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매정신고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하여 입력하십시오.

⑥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제조업자만 작성**

* 공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조회
 * 견수 * 품명
 * 수량 * 매입가액 원

※ 신고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⑦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단위: 원)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견수 품명 수량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⑧ 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단위: 원)

구분	* 매입차수	* 견수	* 매입가액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조회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업종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제율이 나타납니다.

⑨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면세농산물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공제(남부)할 세액이 신고서(43)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⑩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단위: 원)

과세표준	예정분	확정분	합계
대상액 한도계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한도율	<input type="radio"/> 40% <input type="radio"/> 45% <input type="radio"/> 50% <input checked="" type="radio"/> 55% <input type="radio"/> 60% <input type="radio"/> 65%		한도액
당기 매입액	<input type="text"/>	공제대상 금액	<input type="text"/>

* [한도율]
 - 법인사업자 : 40/100
 - 개인사업자 : 45/100 (과세표준합계가 2억 초과인 경우)
 50/100 (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2억 초과인 경우)
 55/100 (과세표준합계가 2억 이하인 경우)
 60/100 (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
 65/100 (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1억 이하인 경우)

⑪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 원)

공제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정신고분 <input type="text"/> 월별조기분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공제(남부)할 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①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공제(납부)할 세액이 신고서(43)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②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단위:원)

과세표준	제1기	제2기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상액 한도계산	한도율 <input type="radio"/> 40% <input type="radio"/> 45% <input checked="" type="radio"/> 55%		한도액 <input type="text"/>
1역년 매입액	제1기 <input type="text"/>	제2기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공제대상 금액		<input type="text"/>	

③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원)

공제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2/102 <input type="radio"/> 4/104 <input type="radio"/> 6/106	<input type="text"/>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제1기 <input type="text"/>	총 합계 <input type="text"/>
	제2기	
	예정신고분 <input type="text"/>	월별조기분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공제(납부)할 세액		<input type="text"/>

- 재활용폐자원신고서 작성하기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역계매입세액	작성하기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작성하기	0
재고매입세액		0
변계태손세액	작성하기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0
합계		0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폐차침은 매입처별로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중고자동차는 거래 건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하여 신고 하십시오.

- 전산매제 제출용으로 생성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4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단위:원)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영수증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조회하기			
합계				

5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단위:원)

<	입력번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매입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
※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식재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식재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수량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차량번호
주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공급자	성명(상호)				
품명		수량	취득금액		
건수				0 원	
공제세율	<input checked="" type="radio"/> 3/103 <input type="radio"/> 10/110(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액	0 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는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과세표준명세서에 중고자동차관련 업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

>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단위:원)

매출액	매경분	회경분	합계
대상액 한도계산	한도율	한도액	
	90 %		
당기매입액	영수증등	세금계산서	합계
공제가능한 금액			

>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원)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3/103		
공제대상 세액	매정신고분	필명조기분	합계
미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이전 **입력완료**

○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④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작성하기	Ⓣ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구분	금액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에만 공제가능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16년부터 폐지	작성하기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0
대리납부세액공제		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0
기타		0
합계		0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입력시 택시운송사업 업종을 입력한 경우에만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금액(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에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입력완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작성

④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작성하기	Ⓣ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전자화폐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공제금액		0 원
공제세액		0 원
기공제세액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법인납세자 : 공제 불가
 2. 개인납세자 중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중 일반과세자 :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입력완료**

○ 최종 납부(환급)세액 작성하기 및 신고서 작성완료

-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제출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원)

거래은행 - 선택 - 계좌번호 []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영세율 상호주의 (단위: 원)

영세율 상호주의 부 작성하기 적용 업종 해당 국가

● 면세사업 수입금액 (단위: 원)

금액 []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서 발생한 계산서는 정기신고서 면세매출액과 일치합니다. (단위: 원)

계산서 발급금액 (82) [] 작성하기
계산서 수취금액 (83) [] 작성하기

이전 신고서 입력완료

● 최종 납부(환급) 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매정신고 미환급 세액 (21)		0%	0
매정고지세액 (22)		0%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도움말	0%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도움말	0%	0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조회하기	0%	0
가산세액계 (26)	필적으로	0%	0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0-0-0-0-0-0+0)	실제 납부환급할 세액		0
종결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0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부여되고 예정신고서 월방환금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표시합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제출화면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신고서 제출

- 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서 출력은 step2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요약 (단위: 원)

매출세액 합계	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증제세액 합계	0	매정신고 미환급 세액	0
매정고지세액	0	가산세액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차가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0		

납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증 출력화면, 납부서 출력하러 가기

○ 제출한 신고서 목록 보기, 납부서 출력하기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탭으로 이동하여 출력 가능

3)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 신고기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단일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기간	2021-01-01 ~ 2021-12-31
사업자등록번호	101 - 10 - 66490 확인
신고구분	2021 년 1기 <input type="radio"/> 예정 <input checked="" type="radio"/> 확정
개업일자	
매정신고(고지)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사업자세부사항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button" value="주소검색"/> ※ 주소 지정 필요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영주소	
지번주소	
업종코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업태"/> <input type="button" value="종목"/>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간이과세자 해당 업종 선택

-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이 기본 선택되어 있음

●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종선택 (21.6.30.이전)	<input type="checkbox"/>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input type="checkbox"/>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농·임·어업	<input type="checkbox"/> 숙박업	<input type="checkbox"/> 운수 및 통신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업(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업종선택 (21.7.1.이후)	<input type="checkbox"/>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농·임·어업	<input type="checkbox"/> 소화물 전문 운송업	
	<input type="checkbox"/> 숙박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업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법 제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사안을 선택하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영세를 매출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 간이과세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서, 반드시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5	과세분	15,000,000	1,500,000
			영세율분	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과세분	0	0
			영세율분	0	
소계	1	5	과세분	15,000,000	1,500,000
			영세율분	0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명세 작성'에서 직접 입력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매출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입력 건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 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처(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과세구분 과세분 영세율분 대입자발행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원 주류 비주류업체

※ 세금계산서 내역(매수,공급가액 등) 입력 후, 오른쪽 '입력내역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주류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

- '발행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된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도움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대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합계
합계	4,000,000	0	0	4,000,000
과세 매출분	4,000,000	0	0	4,000,000
면세 매출분	0	0	0	0
봉사료	0	0	0	0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0	0

이전 입력완료

○ 간이과세자 매출금액 상·하반기 구분입력

- 2021.7.1.부터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변경되어 '2021.6.30. 이전 매출'과 '2021.7.1. 이후 매출'을 구분해서 입력해야함

과세표준 및 매출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집계표」,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과매결제명세서」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항목의 매출금액을 입력한 다음 「과세분 매출」에 21.6.30.이전 과세분과 21.7.1. 이후 과세분을 구분하여 금액(공급대가)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분 매출 (단위:원)

구분	금액(공급대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17,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6,000,000
21.6.30. 이전 과세분명세 조매입, 세정용 세도주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	23,000,000
합계	23,000,000
세금계산서 발행분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29,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8,000,000
21.7.1. 이후 과세분명세 조매입, 세정용 세도주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	37,000,000
합계	37,000,000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금액: 12,240,000 원

21.6.30.이전 과세분		
월임대료 합계	6,000,000원	
보증금 이자	119,013원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	6,119,013원	
21.7.1.이후 과세분		
월임대료 합계	6,000,000원	
보증금 이자	120,987원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	6,120,987원	

- 단일 업종 간편 신고를 선택한 후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상·하반기 임대료 수입금액을 자동 계산하여 채워줌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부동산임대업] 간편신고 작성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 입력된 임대수입금액 합계는 <21.6.30. 이전 과세분>과 <21.7.1. 이후 과세분>으로 자동 계산되어 '금액'란에 채워집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49,859,506
21.6.30. 이전 과세분	25,254,574
21.7.1. 이후 과세분	24,604,932

○ 간이과세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신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②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③ 송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④ 송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 매입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과세분 영세율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상호(법인명)	<input type="text"/>
매수	<input type="text"/>	건	공급가액	<input type="text"/> 원
세액	<input type="text"/>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1 / 총0건(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 삭제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전
입력완료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도움말

· 전산매제 제출용으로 생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화면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합계란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법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세 제출 불필요)
 · 미리보기는 500건만 제공됩니다.
 · 정기신고분 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미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정보

카드회원번호	<input type="text"/>	※ *,- 없이 입력하십시오.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거래건수 <input type="text"/> 건
공급가액	<input type="text"/> 원	세액 <input type="text"/> 원

※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입력내용추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입력내용추가

●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중0건(1/1)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선택내용삭제」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삭제

● 합계 (단위: 원)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현금영수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화물운전자복지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사업용신용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그 밖의 신용카드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회하기
 조회하기
 조회하기

이전
 입력완료

○ 간이과세자 매입분 상·하반기 구분입력

- 간이과세자의 매입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방법이 변경* 되어 '2021.6.30. 이전 공급받은 분'은 매입세액을 '2021.7.1. 이후 공급받은 분'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을 입력해야함

* (2021.6.30. 이전)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 1. 이후) 매입금액(공급대가)×0.5%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단위:원)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2021년 간이과세제도 세법개정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는 21.6.30. 이전과 21.7.1. 이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21.7.1. 이후 공급받은 분(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1.6.30. 이전 세액합계는 매입세액 합계(21.6.30.이전 공급받은 분) 항목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 21.7.1. 이후 매입금액(공급대가)는 매입세액 합계(21.7.1.이후 공급받은 분) 항목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공급대가 x 0.5%)

구분		금액	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12,000,000	1,2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0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금액 항목에 해당기간 매입세액 합계 입력]	계산하기	600,000	180,000
21.7.1.이후 공급받은 분 [금액 항목에 해당기간 매입금액(공급대가) 입력]		6,600,000	33,000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입력

- 세법개정으로 2021.6.30. 이전에 공급받은 분까지만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도움말

· 2021년 간이과세제도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까지만 적용됩니다.(21.7.1.이후 공급받은 분의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배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 매입가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괄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 공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조회

· 견수 · 품명

· 수량 · 매입가액 원

※ 신고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입력내용추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입력내용추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견수	품명	수량	매입가액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선택내용삭제」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삭제						

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단위:원)

공제율 안내

구분	매입견수	견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조회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6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업종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제율이 나타납니다.

이전 입력완료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입력

- 세법개정으로 2021.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021.12.31.까지는 1.3%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매출	매출금액(공급대가)	<input type="text" value="17,000,000"/> 원
	공제세액	<input type="text" value="221,000"/> 원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공급대가 X 2.6%], 그외 다른 업종은 [공급대가 X 1.3%]를 곱한 금액입니다
21.7. 1. 이후 공급한 매출	매출금액(공급대가)	<input type="text" value="29,000,000"/> 원
	공제세액	<input type="text" value="377,000"/> 원 ※ [공급대가 X 1.3%]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확인

- 입력된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1 신고내용

-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2021년 간이과세제도 세법개정으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21.6.30. 이전과 21.7.1. 이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단위:원) 작성하기

매입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5/100	10/100	0
	소매업, 재생활 재포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23,000,000	10/100	10/100	230,00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0	20/100	10/100	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0	30/100	10/100	0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사용 재포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37,000,000	15/100	10/100	555,00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0	20/100	10/100	0
	숙박업 (7)	0	25/100	10/100	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0	30/100	10/100	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0	40/100	10/100	0
영세율 적용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			
	기타 (11)	0		0/100	
재고남부세액 (12)					0
합계 (13)		60,000,000		Ⓢ	785,000

3 공제세액(단위:원) 작성하기

매입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750,000			75,000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13,750,000			68,750
외제매입세액공제 (16)		0			0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0			0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9)					10,00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17,000,000			221,00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29,000,000			377,000
기타 (22)		0			0
합계 (23)				Ⓢ	751,750
매입자 남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0
예정고지(신고)세액 ※ 예정 신고(고지) 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 (25)				Ⓢ	0
가산세액계 (26) 작성하기				Ⓢ	0
자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27)	33,250

4) 부동산임대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신고

- (대상)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폐업자 제외, 직전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하여 간편 신고 이용 가능

① 간이과세자-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선택

②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자동으로 입력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완료' 버튼 클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도움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전산매제(파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동」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변환페이지동

부동산소재지 주소검색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임대수입금액 합계 (단위:원)

구분	임대차 계약내용 보증금	임대차 계약내용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합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보증금 이자(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월 임대료(계)
합계	33,333,333	0	399,999	399,999	0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단위:원)

[부동산임대업] 간편신고 작성

구분	금액	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399,999	11,999

구분	공급가액	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0	0

합계

매입세액 공제세액

예정신고를 하였거나 예정고지를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고지) 세액

이전
입력완료

④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단위:원) **작성하기**

매출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	부가 가치세	세율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5/100	10/100	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0	10/100	10/100	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0	20/100	10/100	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99,999	30/100	10/100	11,999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제사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 (5)	0	15/100	10/100	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를 전문 운송업 (6)	0	20/100	10/100	0
	숙박업 (7)	0	25/100	10/100	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0	30/100	10/100	0
영세 적용분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0	40/100	10/100	0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			
기타 (11)		0		0/100	
재고납부세액 (12)					0
합계 (13)		399,999		Ⓢ	11,999

● 공제세액(단위:원) **작성하기**

매입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	부가 가치세	세율	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0			0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0			0
의제매입세액공제 (16)		0			0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0			0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9)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0			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0			0
기타 (22)		0			0
합계 (23)				Ⓢ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0
예정고지(신고)세액 ※ 예정 신고(고지) 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 (25)				Ⓢ	0
가산세액계 (26)		작성하기		Ⓢ	0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27)	11,999

5) 정기신고(대화형 방식)

- (대상) 단일 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매출, 영세율 매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신고

① 정기신고(대화형 방식) 선택

②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문답형 신고 바로가기’ 선택

- ③ 기본정보 입력 및 업종선택 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화면에서 각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방식으로 매출금액 등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귀 사업장에서 과세기간(1.1 ~ 12.31)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신용카드(직분카드 포함)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 금액을 모르시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입력하세요 (단위:원)

신용 · 직분 · 기명식 선분카드 **조회하기**

※ 결제대행(택시, 미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 금액을 모르시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입력하세요 (단위:원)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 결제대행(택시, 미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직분·기명식·선분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 금액을 모르시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입력하세요 (단위:원)

직분·기명식·선분전자지급수단

※ 결제대행(택시, 미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 밖의 매출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위:원)

21.6.30. 이전 과세분명세 그 밖의 매출액

21.7.1. 이후 과세분명세 그 밖의 매출액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매출	매출금액(공급대가)	<input type="text" value="0"/> 원
	공제세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small>※ 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공제금액 X 2.6%], 그외 다른 업종은 [공제금액 X 1.3%]를 공한 금액입니다</small>
21.7. 1. 이후 공급한 매출	매출금액(공급대가)	<input type="text" value="0"/> 원
	공제세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small>※ [공제금액 X 1.3%]를 공한 금액입니다</small>

기본정보 입력 | 이전 | **저장후 다음** | 신고내용

- ④ 업종별 신고내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등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1) 무실적 신고자(모든 사업자 신고 가능)

<p>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p>	<p>② 로그인</p>	<p>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p>
<p>④ 세금신고/납부 선택</p>	<p>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p>	<p>⑥ 무실적신고 선택</p>
<p>⑦ 신고서 작성·제출</p>	<p>⑧ 접수내용 확인</p>	

2)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

① 로그인

손택스 통합 로그인

ID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이용안내

- 공통인증서 로그인은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서비스는 일부 콘텐츠(이용안내/민원상 담 등)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세 일반 정기신고 선택

국세납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③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사업자

신고구분 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코드 701201

업태 부동산임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정포, 자기용)

④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 선택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출저벌세금계산서 집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현금매출 명세서

기타매출분

과세표준명세

⑤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

신고내용(양쪽) 3/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세율:10/100)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

매출저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소외

중이세금계산서와 전술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저벌 명세 작성

1일씩 또는 1수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출서명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과당가액	세액	주류
<input type="button" value="선택서식"/>						

⑥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입력(1/2)

신고내용(양쪽) 3/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세율:10/100)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
(4)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0	0

기타 매출분

현금매출명세서

금액 0 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금액 0 원

⑦ 임대보증금명세서 입력(2/2)

부동산임대보증금명세서 5/13

임대사업명세서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임대사업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위: 원)

선택	사업자(주인)등록번호	임대인 상호(성명)
		상세보기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임대수입금액 합계

임대사 계약내용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임대수입금액(세제표준)

합계 원

보증금 이자(계) 원

월 임대료(계) 원

⑧ 과세 기타 매출분 입력

(4)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원

7기타매출분 7/13

기타 매출분

현금매출명세서

금액 원

부동산임대보증금명세서

금액 원

[부동산임대보증금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 이자 합계 204,590원을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십시오.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금액 원

세액(10/100) 원

⑨ 과세표준명세서 입력

과세표준명세서

과세표준금액을 업로드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과세4순 및 매출세액도 작성하신 분은 해당 배당금액 작성 전 반드시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십시오.

금액 원

과세표준명세서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한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한계 0원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의 업로드 조회 (단위: 원)

업로드 코드	금액
업태	종목
701201	코드 조회

부동산업 비누거용 건물 임대업

합계 원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시인도로부터 전거용, 수도권용 등 공급을 위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제외)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⑩ 매입 세급계산서 입력

매입세액

항목	금액	세액
(10)세급계산 서류취급 및 반납입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급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급계산서 조회하기

중이세급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급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입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위: 원)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일/우(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⑪ 매입 신용카드 입력(1/2)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금액 원

(15)합계 (10-(10-1)+(11)+(12)+(13)+(14))

금액 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일반매입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고정자산매입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합계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⑫ 매입 신용카드 입력(2/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10/1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기명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거래내역 명세를 작성하십시오.

입력된 내용은 해당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위: 원)

선택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⑬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

신고내용(약목) 3/12

경감-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8)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10,000"/>	<input type="text" value="0"/>
(19)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0) 합계	<input type="text" value="10,000"/>	<input type="text" value="0"/>
(20-1)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	----	----

(단위: 원)

⑭ 최종 확인 후 '신고서입력완료'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21)예정신고 미납금 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2)예정고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3)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4)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5)신용카드 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6)가산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27)차감하여 납부할 세액(합계) (10-10-10-10-10-10-1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합계(납부(환급)세액) 원

⑮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13/13

신고서 제출

신고내역 요약 (단위: 원)

배출세액 단계	2,000,000
매입세액 단계	0
경감공제세액 단계	10,000
예정신고 미납금 세액	0
예정 고지세액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신용카드 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1,550,000
가산세액	0
차감(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440,000

3) 일반과세자(화물운수업)

① 로그인

손택스 통합 로그인

ID: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이용안내

- 공통인증서 로그인은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졸택스 서비스는 일부 콘텐츠(이용안내/민원상담 등)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로 졸택스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세 일반 정기신고 선택

국세납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수정신고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부가가치세 상담도움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③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 신고구분: 년

· 신고대상기간: -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일자:

업종코드:

업태: 운수 및 창고업

종목: 봉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④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 선택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현금매출 명세서
- 기타매출분
- 과세표준명세

⑤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

신고내용(합계) 8/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세율: 10/100)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
합계	작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이세금계산서와 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출처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유

⑥ 과세표준명세 입력

과세표준명세서

과세표준명세를 업로드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산정대상 부분 아닌 과업명세 작성 전 반드시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원

과세표준명세

이제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이 없게는 미리 작성한 세금금액의 0%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의 업종코드 조회 (단위: 원)

업종코드	금액
연대	종목
701201	금액
주유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⑦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액
(10)세금계산서 수취분 일괄매입	0	0
합계	작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이세금계산서와 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입처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⑧ 매입 신용카드(1/2)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항목	금액	세액
(15)합계 (10-(10-1)+(11)+(12)+(13)+(14))	0	0
합계	작성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0	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0	0
합계	작성	

⑨ 매입 신용카드(2/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거래내역 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내용은 하단의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선택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⑩ 전자세액공제 입력

신고내용(앞쪽) 3/12

경감·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8)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19)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0	0
(20) 합계		10,000
(20-1)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0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⑪ 최종 확인 후 신고서입력완료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21)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0
(22)예정고지 세액		0
(23)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24)메일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25)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26)가산세액		0
(27)차기검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0

⑫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13/13

신고서 제출

신고내분 요약

항목	금액
매출세액 합계	2,000,00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공제세액 합계	10,000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0
예정고지세액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메일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1,250,000
가산세액	0
사각납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440,000

⑬ 접수결과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수인) 등록번호

신고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보바일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국세청홈페이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4)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 임대업)

- (대상1)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기입력된 임대차 계약내용 및 세액 확인 후 원클릭 신고

<p>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p>	<p>②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p>	<p>③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p>
<p>④ 부동산임대업 선택</p>	<p>⑤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p>	<p>⑥ 직전기 계약내용과 동일 시 확인</p>
<p>⑦ 임대수입금액 확인</p>	<p>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p>	<p>⑨ 신고서 접수내용 확인</p>

○ (대상2)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차인이 1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 가능

①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② 부동산임대업 선택

③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

④ 직전기 계약내용 변경 시 취소

⑤ 계약내용 입력(1/2)

⑥ 계약내용 입력(2/2) 후 '저장후다음'

⑦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확인

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제출'

⑨ 신고서 접수내용 확인

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자(부동산임대업 외 업종)

-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경우 신고 가능

<p>①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p> <p>로그아웃 Hometax 손택스</p> <p>홈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p> <p>국세납부</p> <p>부가가치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일반(무실적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간이(무실적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 	<p>② 부동산임대업 외 선택</p> <p>아래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 주십시오.</p> <p>무실적신고</p> <p>일반과세자 및 법인</p> <p>간이과세자</p> <p>간이과세자 간편신고</p> <p>부동산임대업</p> <p>부동산임대업 외</p> <p>납부면제자(부동산임대업 외)</p>	<p>③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p> <p>부가가치세 신고</p> <p>기본정보</p> <p>과세기간 - -</p> <p>신고구분 년 1 기</p> <p>신고대상 구분 예정 확정</p> <p>사업자 등록번호 - - - - -</p> <p>상호</p> <p>주민등록번호</p> <p>성명</p> <p>저장 후 다음</p>
<p>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p> <p>매출입력</p> <p>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p> <p>금액 0 원</p> <p>작성하기</p> <p>21.6.30 이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p> <p>21.6.30까지의 중 매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p> <p>과세분 매출 금액 0 원</p> <p>과세분 매출 부가가치율 10/100</p> <p>과세분 매출 세액 0 원</p> <p>과세분 매출세액 = 과세분 매출금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p>	<p>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저장후다음'</p> <p>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p> <p>신용카드 0 원</p> <p>신용·직불·기명식 신용카드 함께 입력</p> <p>현금영수증 0 원</p> <p>선불전자지급수단 0 원</p> <p>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함께 입력</p> <p>합계(과세) 0 원</p> <p>저장 후 다음</p>	<p>⑥ 매출액 입력 후 '저장후다음'</p> <p>21.6.30 이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p> <p>21.6.30까지의 중 매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p> <p>과세분 매출 금액 0 원</p> <p>과세분 매출 부가가치율 10/100</p> <p>과세분 매출 세액 0 원</p> <p>21.7.1 이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p> <p>21.7.1 이후 매출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생분과 기타 현금매출 금액으로 나누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p> <p>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생분(A) 0 원</p> <p>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입력한 금액 중 21.7.1 이후 매출 금액 입력</p> <p>기타 (현금영수증 외 매출분)(B) 0 원</p>
<p>⑦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p> <p>사업장현황명세서 기본사항</p> <p>대지 0 m²</p> <p>건물</p> <p>자상 0 m²</p> <p>지하 0 m²</p> <p>바닥면적 0 m²</p> <p>연면적 0 m²</p> <p>종업원수 0 명</p> <p>차량</p> <p>승용차 0 대</p> <p>화물차 0 대</p>	<p>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제출</p> <p>신고상세 내용</p> <p>신고분류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업 외)</p> <p>매출금액 0 원</p> <p>매출세액 0 원</p> <p>매입공제금액 0 원</p> <p>매입공제세액 0 원</p> <p>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0 원</p> <p>전자신고세액공제 0 원</p> <p>예정고지(신고)세액 0 원</p> <p>자기감 납부할세액 (환급받을 세액) 0 원</p> <p>실제 납부할세액 (환급받을 세액) 0 원</p>	<p>⑨ 신고서 접수내용 확인</p> <p>접수내용</p> <p>접수번호</p> <p>접수일시</p> <p>과세기간 - -</p> <p>신고구분 : 년 1 기</p> <p>신고대상 구분 정기(확정) / 허가신고</p> <p>사업자 등록번호</p> <p>상호</p> <p>자기감 납부할세액 0 원</p> <p>실제 납부할세액 0 원</p> <p>위와 같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되었습니다.</p> <p>확인</p>

6) 간이사업자 간편신고(납부의무 면제자, 임대업은 제외)

-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이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①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②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③ 납부의무면제자(부동산임대 외) 선택

④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

⑤ 매출액 입력 후 '저장후다음'

⑥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⑦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등 입력

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제출'

⑨ 신고서 접수내용 확인

다. 보이는 ARS 신고(☎ 1544-9944) 방법

1) 무실적 사업자(모든 사업자 신고 가능)

- 음성 ARS도 신고순서는 동일함

<p>ARS 시스템 연동</p>	<p>보이는 ARS 선택</p>	<p>무실적 신고 선택</p>
<p>사업자등록번호 입력</p>	<p>주민등록번호 입력</p>	<p>신고서 작성</p>
<p>신고서 제출</p>		

2)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 - 음성 ARS도 신고순서는 동일함

ARS 시스템 연동

보이는 ARS 선택

부동산 임대 신고 선택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 1 무실적 신고
- 2 부동산 임대 신고 (직전기동함)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확인 (#)

개별인증 번호 입력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확인 (#)

신고서 작성

인증되었습니다. 직전기와 동일한 임대차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다만, 직전기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임대차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신고서 작성 >
- 2 종료 >

신고서 제출

직전기와 동일한 임대차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매출금액	36,900,000원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실제 납부할 세액	1,097,000원

납부방법
①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납부서를 클릭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
②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직접납부

- 1 신고서 제출 >
- 2 종료 >

<참 고> 신고여부 조회 기능 신설(22.1월부터)

○ ARS로 신고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 없이 「보이는 ARS」로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

- ARS로 기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인증완료* 시 기 제출된 신고서 확인화면으로 바로 이동

* (무실적) 사업자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번호 ⇒ 개별인증번호

ARS 시스템 연동	보이는 ARS 선택	무실적 신고 또는 부동산임대 신고 선택																		
<p>사업자등록번호 입력</p> <p>1544-9944</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부가가치세 신고</p> <p>사업자번호 입력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입니다.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p> <p>숫자만 입력해 주세요.</p> <p>확인 (#)</p>	<p>주민등록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보이는 ARS</p> <p>음성 ARS</p> <p>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p> <p>숫자만 입력해 주세요.</p> <p>확인 (#)</p> <p>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p> <p>숫자만 입력해 주세요.</p> <p>확인 (#)</p>	<p>기 제출된 신고서 확인(무실적1/2)</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부가가치세 신고</p> <p>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ARS로 이미 제출한 무실적 신고서 내역이 존재합니다.</p> <p>1 신고서 내용 확인 ></p> <p>2 종료 ></p>																		
<p>기 제출된 신고서 확인(무실적2/2)</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부가가치세 신고</p> <p>무실적 신고서 신고내용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신고내용</td> <td></td> </tr> <tr> <td>예정고지세액</td> <td>0원</td> </tr> <tr> <td>전자신고세액공제</td> <td>0원</td> </tr> <tr> <td>실제 납부할 세액</td> <td>0원</td> </tr> </table> <p>1 종료 ></p>	신고내용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0원	실제 납부할 세액	0원	<p>기 제출된 신고서 확인(임대1/2)</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부가가치세 신고</p> <p>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ARS로 이미 제출한 부동산 임대 신고서(직전기 동일) 내역이 존재합니다.</p> <p>1 신고서 내용 확인 ></p> <p>2 종료 ></p>	<p>기 제출된 신고서 확인(임대2/2)</p> <p>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p> <p>부가가치세 신고</p> <p>부동산 임대 신고서 신고 내용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신고내용</td> <td></td> </tr> <tr> <td>매출금액</td> <td>24,600,000원</td> </tr> <tr> <td>예정고지세액</td> <td>0원</td> </tr> <tr> <td>전자신고세액공제</td> <td>0원</td> </tr> <tr> <td>실제 납부할 세액</td> <td>0원</td> </tr> </table> <p>1 종료 ></p>	신고내용		매출금액	24,600,000원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0원	실제 납부할 세액	0원
신고내용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0원																			
실제 납부할 세액	0원																			
신고내용																				
매출금액	24,600,000원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0원																			
실제 납부할 세액	0원																			

2 전자납부 요령

가. 홈택스(PC)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1) 서면신고한 후 납부만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



○ 납부할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

자진납부 납부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았거나 전자신고 후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회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더보기 +](#)

● **납부서 작성** (① 납부구분, ② 세목, ③ 납세자번호, ④ 납부할 세액 순으로 작성)

● **전자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21년 6월	1 확정분자납	41 부가가치세	자동 발행

● **납세자**

납세자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확인] 납세자명: []

● **수입징수권서(납세자의 관할 세무서)**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일반회계
선택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10일 미만은 자동 결사, (달초) 납부기한이 결과한 경우 가상세를 합산하여 입력)**

* 부가가치세	0 원	교육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납부기한	2021-06-24
합계	0 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 ‘국세인터넷납부’ (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창이 뜨면, 결제수단을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고, 결제수단별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본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은행 선택
등신상태	은행 지정
납부계좌번호	신입입
계좌비밀번호	기업
간금연락처	개인
	수출
	농협은행
	농협형
	우진
	SC
	신협
	신협지리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충청
	충남
	충북
	충청도
	신협중앙회
	신협지리
	신협지리
	신협지리

금융기관 및 납부가능 시간 안내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금융기관	납부시간	납부요금
기업, 수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매일 00:30~23:30	모든요금(일부요금 제외)

납부하기 취소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납부카드 선택

카드선택

카드를 선택하세요

- 광주은행카드
- 제주은행카드
- 전북은행카드
- 씨티카드
- 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구 외환 포함)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NH카드
- 수협카드
- 롯데카드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를 선택하세요

- 페이코(PAYCO)
- KB국민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NH카드
- 롯데카드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2) 전자신고 후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며, 해당 신고내역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전자 신고를 하였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조회 >

- (전자신고)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직전납부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 납부 >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 (22시 이후 납부결과와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는 각각 본인 주민번호로 가입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더보기 +

조회하기

· 납부결과 반영에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납부결과와 납부내역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 납부할 건수 : 0 건 · 납부할 세액 : 0 원

총 0 건, 0 원 선택하셨습니다. 납부서 사전 출력

<input type="checkbox"/>	과세 구분	세목	(직전)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전자납부번호	귀속연월	관서명(코드)	담당자
1 총 0 건(1/1)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 일차별 납부할 세액 계산(고지분)

-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창이 뜨면, 결제수단을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고, 결제수단별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 클릭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본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등산상태: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긴급연락처:

금융기관 별 납부가능 시간 안내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금융기관	납부시간	납부요금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매일 00:30~23:30	모든요금(일부요금 제외)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납부카드 선택

카드선택: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공주신용카드	2016.12.20
제주신용카드	2018.05.17
전북신용카드	2018.05.17
씨티카드	2017.07.14
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	2017.07.10
KB국민카드	2017.07.07
하나카드(구 외환 포함)	2017.07.05
삼성카드	2017.07.05
신한카드	2017.07.05
현대카드	2017.07.05
NH카드	2017.07.05
수협카드	2017.07.05
롯데카드	2017.07.05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안내

페이코(PAYCO)	2016.12.20
K국민앱카드	2018.05.17
삼성앱카드	2017.07.14
신한앱카드	2017.07.10
현대앱카드	2017.07.07
NH앱카드	2017.07.07
롯데앱카드	2017.07.05

나.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금융결제원사이트(http://www.cardrotax.kr) 초기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국세' ⇒ '자진납부'를 클릭



○ 공동인증서 등록



○ 납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국세납부

조회납부

자진납부

연대납부

☞ 금융회사별 납부시간 안내

고객센터 1577-5500

- 평 일 : 9시 ~ 18시
- 남기말 : 9시 ~ 21시
* 남기말 보기

반도체가

자진납부

Step01
납부금보 입력

Step02
입력정보 확인 및 납부

Step03
납부결과 확인

- 회원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만원 이상 금액만 수납처리 됩니다. (단수금액 수납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 부담)
-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이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위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2021 년	납부회계	기회재정부 장관	조세
------	--------	------	----------	----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년월	결정구분	세액
010	21 06	1 확정본 자납	41 부가가치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납부의무자명을 기입하십시오.)	납세자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없이 입력하십시오.)
세입징수권서	선택	세입징수권계좌번호 180616

○ 납부 할 세금내역 (납부하실 세금만 입력하시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세	10,000 원	합
교육세	0 원	합
농어촌특별세	0 원	합
합계	10,000 원	합

확인

○ 결제수단선택에서 ‘신용카드’를 선택

○ 납부 할 세금내역

본세	10,000 원
교육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합계	10,000 원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복합결제(신용카드 + 계좌이체)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카드선택, 할부기간, 카드번호 등을 선택·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 납부카드 선택

* 카드선택	카드를 선택하세요 <input type="button" value="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 할부기간	할부기간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5만원 미만은 할부불가)"/>
* 카드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유효기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2017년 1월인 경우 이/가 7로 입력>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 실납부자 본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회원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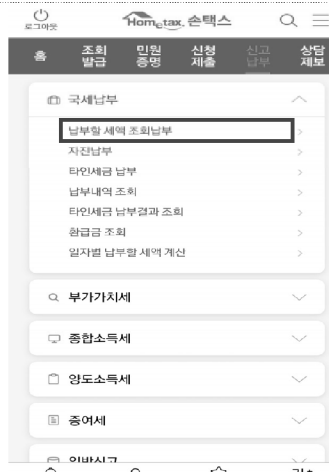
*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 추가 부담

- 각 해당카드사의 카드결제 창을 통하여 카드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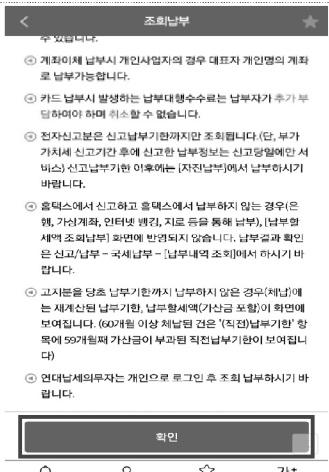
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 홈택스’ 초기화면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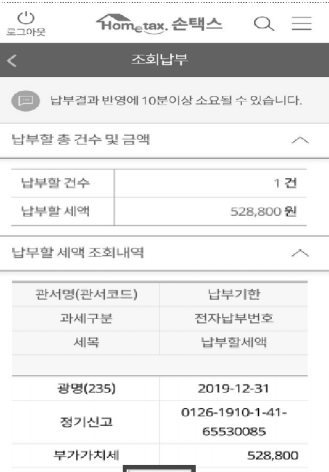
①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② 조회납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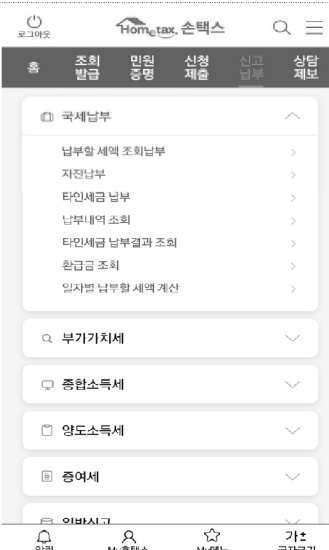
③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된 앱카드* 등을 이용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

* 페이코 등 4개 간편 결제, 6개 앱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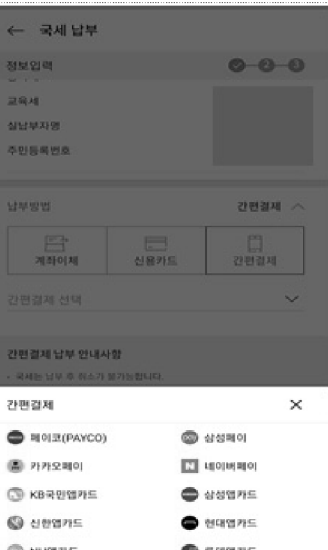
① 신고/납부 화면



② 납부방법 선택



③ 간편결제 선택



라.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1) 수동 납부서 서식 출력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Tax Service homepage with a navigation menu. The '국세정책/제도' (National Tax Policy/Regulation) menu is expanded, and '세무서식' (Tax Forms) is highlighted in a grey box. Other items in the menu include '법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신용증 세무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세금) 계산서/원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국제조세정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조세소송', '세법해석 질의 안내', and '통합자료실'.

- '영수증서'로 검색하여 납부서 서식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세무서식' (Tax Forms) search results pag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영수증서' (Receipt Form). The results table shows 4 items:

번호	공표일자	서식번호	서식명	첨부파일
4	20210316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3	20210316	서식 4	영수증서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age includes a search bar with '영수증서' entered, a '검색' (Search) button, and a 'Total 4 건' (Total 4 items) indicator. The page number is '페이지 1 / 1'.

2)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는 방법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탭에서 해당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서 출력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실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회원을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분납 등 추가 납부서 포함)에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반영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재중독목

* 신고일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정보 공개 여부 예 부 ☞ 정보 공개 대상 :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2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input type="checkbox"/>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납부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실(간음)	보기		srkan...	N	-

3)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가상계좌를 조회하는 방법

- 신고서 접수증에서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 사용자명: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접수결과: [] 정상: []

재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원)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 납부서 팝업창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1면)

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126-2106-1-41-05789213)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1 06	1	41	05789213	부산세무서	130	110240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회계연도		2021				
사업장(주소)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2021년 1기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21년 07월 26일
세목명	납부금액	
부가가치세	2,238,549	
교육/방위세	0	
농어촌특별세	0	
가산금	0	
계	2,238,549	

가상계좌 (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2021.07.26 (예약이체불가)
국세계좌 0126-2106-1-41-05789213	기업 000-1825-2333-04-4
KEB하나 191-0997-5812-33-7	신한 542-1025-1929-21-7
국민 031-1825-1800-11-4	우리 018-0071-0078-19-2

년 월 일

은 행 등 지점 수납인

※ 이 납부서는 FAX로 전송하거나 복사하시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고 집중기간에는 가상계좌 조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일 : 2021년 06월 04일

○ (참고)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남	211	180616	동화성	151	027684	역삼	220	181822
강동	212	180629	마산	608	140672	연수	150	027300
강릉	226	150154	마포	105	011840	영덕	507	170189
강서	109	012027	목포	411	050144	영동	302	090311
거창	611	950419	반포	114	180645	영월	225	150183
경산	515	042330	보령	313	930154	영주	512	910378
경주	505	170176	부천	130	110246	영등포	107	011934
경기광주	233	023744	부산진	605	030520	예산	311	930167
고양	128	012014	북광주	409	060671	용산	106	011947
공주	307	080460	북대구	504	040772	용인	142	002846
관악	145	024675	북대전	318	023773	울산	610	160021
광명	235	025195	북부산	606	030533	원주	224	100269
광산	419	027313	북인천	122	110233	은평	147	026165
광주	408	060639	북전주	418	002862	의정부	127	900142
구로	113	011756	분당	144	018364	이천	126	130378
구리	149	027290	삼성	120	181149	익산	403	070425
구미	513	905244	삼척	222	150167	인천	121	110259
군산	401	070399	상주	511	905260	장실	230	019868
금정	621	031794	서산	316	000602	전주	402	070438
금천	119	014371	서초	214	180658	정읍	404	070441
기흥	236	026178	서광주	410	060655	제주	616	120171
김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제천	304	090324
김포	234	023760	서대문	110	011879	종로	101	011976
김해	615	000178	서대전	314	081197	중랑	146	025454
나주	412	060642	서부산	603	030546	중부	201	011989
남원	407	070412	서인천	137	111025	중부산	602	030562
남대구	514	040730	성남	129	130349	진주	613	950435
남대문	104	011785	성동	206	011905	창원	609	140669
남부천	152	027685	성북	209	011918	천안	312	935188
남양주	132	012302	세종	320	025467	청주	301	090337
남인천	131	110424	속초	227	150170	춘천	221	100272
노원	217	001562	송파	215	180661	충주	303	090340
논산	308	080473	수성	516	026181	통영	612	140708
대전	305	080486	수영	617	030478	파주	141	001575
도봉	210	011811	수원	124	130352	평택	125	130381
동래	607	030481	순천	416	920300	포천	231	019871
동작	108	000181	시흥	140	001588	포항	506	170192
동고양	232	023757	아산	319	024688	해남	415	050157
동대구	502	040769	안동	508	910365	해운대	623	025470
동대문	204	011824	안산	134	131076	홍성	310	930170
동수원	135	131157	안양	123	130365	홍천	223	100285
동안양	138	001591	양산	624	026194	화성	143	018351
동울산	620	001601	양천	117	012878			
동청주	317	002859	여수	417	920313			



자주 찾는 문답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5. 간이과세제도 개편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

-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 '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에금이자율 × $\frac{\text{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text{일}}$

·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 '21.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4일(7~12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총당한 경우 총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만 적용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145page 참고)
- ◆ 의제매입세액 공제(141page 참고)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형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개인 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142page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143page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145page 참고)
 -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1.12.31.까지는 1.3%)
 -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제외	반기매출액의 40%

구분	개인 음식점업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65%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times \frac{3}{103}$
 - 공제 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times \frac{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times \frac{10}{110}$
 - 중고자동차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3.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14.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frac{10}{110}$
-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 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희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1.12.31.까지는 1.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대가) × 0.5%를 적용

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부가령 §88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 ☞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 부가가치세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22.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24.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입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입동의 방법]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입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② 온라인 수입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에서 [수입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입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는 2022.1.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2.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2.1.12.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20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1. 7. 1. ~ '22. 6. 30.

※ '22.7.1.부터 직전 연도('21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6. '21.6.25.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1.8.15.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 '21.8.15.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1.8월 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1.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9.1.1. 이후 거래분)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예) '21.10.5. 발급한 경우 '22.1.25.까지 전송	0.3%	해당없음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예) '21.10.5. 발급한 경우 '22.1.25.까지 미전송	0.5%	

*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령 §75조 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부과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11.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비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 · 민원증명 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

☞ 홈택스 - 로그인 - 「로그인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 「로그인 안내」 클릭한 다음 ‘아이디·비밀번호’ 탭을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와 관련한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줌 (개인정보 보호 차원)
-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 비밀번호가 전송됨
 -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휴대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 *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작성방법)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바로가기 ⇒ '전자신고 동영상' 참고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2기 부가세 신고의 경우 1.10.~1.24.까지는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신고마감일인 1.25.은 06:00부터 24:00까지 운영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9. 이전에 전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 (약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0.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11.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미리보기에서 신고서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 ☞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불러오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13.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

- ☞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4.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

- ☞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한 후 왼쪽 메뉴 '0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 ☞ 총괄납부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 하나요?

- ☞ 홈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 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내용 앞쪽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8.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

2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입력됩니다.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포함)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22.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 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23.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4.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5.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6.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

☞ 사업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 ※ 영세율 매출·매입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되며, 수정·경정청구는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만 가능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가능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신고만 이용 가능

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8.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 홈택스는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은 주민등록번호로만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선택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탭 선택

⇒ 간편인증 버튼 선택

⇒ 민간인증 사업자를 선택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지문, PIN번호 등으로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29. 홈택스 로그인 오류 조치방법

☞ 홈택스 로그인 시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화면의 '로그인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전환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는 경우)
 -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에 홈택스 추가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모든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을 선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이용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 ⇒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로그인 하는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 선택창은 나오는데 로딩현상으로 로그인 불가능한 경우
 - ⇒ 홈택스 화면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에 가서 '공동인증서(MAGIC-PKI)' 재설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 요령 120page 참조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한, 상호저축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홈택스는 07:00부터 23:30까지 납부 가능

3.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전자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납부서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 ⇒ 납부할 세액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 ⇒ 금융결제원 지로화면 ⇒ 결제수단 선택·입력 ⇒ 납부하기

[납부확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5.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21.2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6.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는 사업장 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7.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홈택스 및 카드로택스 사이트(www.cardrotax.kr)¹⁾ 또는 은행 CD/ATM기²⁾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1)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2) 은행 CD/ATM기(우리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5 간이과세제도 개편 관련 문의

1.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

- ☞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 모든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②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2. 동일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겸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

- ☞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 동일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②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3.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 산정방법은 ?

-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연 매출액)를 합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4. 개정규정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에서 직전연도라 함은 '20년을 말하는 것인지 ?

☞ '21년 간이과세 적용 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에서 직전연도는 '2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5. '21년 7월 유형전환대상자에 직전연도인 '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배제업종 아닌 경우)인 일반과세자도 해당이 되는지 ?

☞ '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제외)인 일반과세자는 '21.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6.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동일한지 ?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7.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하는지 ?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8.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만기 환산 하는지 ?

-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다만, 신규 개업자, 휴업자·폐업자 및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시행 시기는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10. 1~12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시기는 ?

-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11.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

- ☞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70조 참조

12.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간이 소매업체가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1,100천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

- ☞ 세금계산서는 받은 대가 1,100천원의 100/110에 해당하는 1,000천원은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인 100천원은 부가가치세액에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6조 참조

13.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은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는 모든 사업장(소매업 &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 다만,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참조

14.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15.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공급자)와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신청할 수 있는지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참조

1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당해 연도의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참조

1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18. 개정규정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직전 연도라 함은 '20년을 말하는 것인지 ?

☞ '21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직전 연도는 '2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19.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기존 일반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을 준용하는지 ?

- ☞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은 따로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14호서식(세금계산서)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20. 세금계산서에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할 수 있는지 ?

- ☞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2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불문하고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참조

2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

-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1.1.~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 참조

2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참조

2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 양식이 존재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 ☞ 다만, '21.7.1.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별지 제44호 서식) 참조

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

-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참조

26.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기존에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이었으나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감소한 사유는 ?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을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참조

27.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참조

28.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을 의미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2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제 가능한지 ?

-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63조 참조

30.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일정 요건이란 ①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②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31.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과세자인데, 당초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의무면제 대상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합니다.
-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참조

3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참조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3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 대상 여부에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며, 당해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3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통지서를 해당 간이과세자가 송달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36.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0.5%)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공급대가×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참조

37.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불공제하는지, 공제는 하되 가산세는 부과되는지 ?

-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0.5%)은 공제됩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공급대가×0.5%)가 부과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9조 및 제6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38. 간이과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참조

3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88조 참조

4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2,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참조

41. 간이과세제도를 개정하게 된 이유(취지)는 ?

-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42.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4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그 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구분이 되는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그 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참조

45. '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4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변경(공급대가 변경으로 영수증 발급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도 자동으로 변경되는지 ?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도 자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4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4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이 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2기 확정)

발행일자: 2021년 12월

발행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5)로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